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 2279 호
- 다. 발의일자 : 2021. 04. 01.
- 라. 회부일자 : 2021. 04. 06.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는 1991년 서울특별시 소속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환경미화원의 공무원 전환으로 인하여 적용 대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정비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서울특별시 소속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1991.5.25일 제정(서울특별시조례 제2755호)되었으나 2012년부터 市 소속 환경미화원의 공무원직 전환으로 적용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는 1991년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대여하려는 취지였으나,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에 따라 2013년까지 사업소별로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인 공무원직 환경정비원으로 전환되면서 적용대상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현행 조례에 적용받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조례 존속 필요성은 상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조례 폐지의 요건과 정당성은 갖추어졌다 사료됨.
- 다만, 본 폐지조례안은 부칙으로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조례에 따라 학자금 대여를 지원받은 환경미화원 중 총 2명이 현재까지 변제 중에 있고, 이들의 학자금 대여 상환이 2022년 3월이 되어서야 완료될 예정인 것을 반영한 것임.

[표 1]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상환 현황

| 구 분 | 성 명 | 입사일 | 퇴직일 | 대여총액 | 2021.1. 기준 잔여액 | 상환예정일 |
|-----|-----|------------|-------|-------------|----------------|----------|
| 1 | ○○○ | 1995-08-10 | 2027년 | 3,460,000원 | 1,009,280원 | 2022년 3월 |
| 2 | ○○○ | 2004-04-01 | 2027년 | 13,370,000원 | 3,899,640원 | 2022년 3월 |

- 참고로, 서울시 역시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인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없어졌고, 상환이 완료되기 전 변제 중인 2명이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